

루리 위키 > 가이드 · 고민 해결

홈 > 고민 해결

루리의 줍줍 · 응모·실무 가이드

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: 25% 기준·공제율...

루리의 줍줍이 정리한 글



##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: 25% 기준·공제율·한도 풀어 보기

루리

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부분에만 적용돼요.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연간 한도를 알면 대략 얼마가 공제되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요.

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부분에만 적용돼요. 결제수단별 공제율과 연간 한도를 알면 대략 얼마가 공제되는지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어요.

국세청·법령 안내를 정리한 일반 설명이에요. 연말정산 전체 준비는 다른 글을 참고하고, 이 글은 이 항목의 계산만 다뤄요. 예시는 설명용 가상 예시예요.

### 1. 1. 공제 대상 사용액

- 신용카드, 직불·선불카드,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가 **총급여의 25%**를 넘으면 그 초과분에 공제율을 곱해요. 법령은 이 기준선을 「최저사용금액」이라고 불러요.
-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사용액도 포함할 수 있어요. 다만 그 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)여야 해요. 형제자매 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아요.
- 가족카드는 결제자가 아니라 카드를 쓴 사람 기준이에요.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액을 각자 공제해요.

## 2 2. 공제율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제율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신용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% |
| 현금영수증, 직불·선불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% |
| 전통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% |
| 대중교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0% |
| 도서·신문·공연·박물관·미술관·영화관·체육시설<br>(총급여 7천만원 이하) | 30% |

- 문화비 등의 공제율은 기간에 따라 한시적으로 달라진 적이 있어요. 2026년 귀속분에 적용되는 세부 공제율은 홈택스·국세상담센터에서 **공식 확인**하세요.

## 3 3. 공제 한도

국세청 Q&A(2025년 기준 표기)는 다음처럼 안내해요.

| 총급여     | 기본 한도 | 추가 한도 |
|---------|-------|-------|
| 7천만원 이하 | 300만원 | 300만원 |
| 7천만원 초과 | 250만원 | 200만원 |

- 추가 한도는 전통시장·대중교통(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문화비 포함) 사용분이 기본 한도를 넘을 때 쓰여요.
- 법령 조회 화면에는 자녀 수에 따라 한도를 늘리는 규정도 보여요. 적용 연도와 조건은 이 글에서 확정하지 못했어요. **공식 확인**이 필요해요.

## 4 4. 계산 순서

- 총급여 × 25% = 최저사용금액을 구해요.
- 결제수단별 사용액을 모아요.
- 최저사용금액을 넘는 부분에 공제율을 곱해요(조문은 최저사용금액을 15%·30%·40% 구간별로 차감하도록 정해요).
- 합계가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공제돼요.

-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실제 절세액은 본인 세율에 따라 달라요.

## 5. 가상 예시

총급여 4,000만원인 C씨의 최저사용금액은 1,000만원이에요. 신용카드 1,500만원, 체크카드 500만원을 썼고 최저사용금액을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먼저 뺀다고 가정하면(설명용):

- 신용카드:  $(1,500\text{만} - 1,000\text{만}) \times 15\% = 75\text{만원}$
- 체크카드:  $500\text{만} \times 30\% = 150\text{만원}$
- 합계 225만원은 한도 300만원보다 작으므로 225만원이 공제 대상이에요.

## 6. 공제에서 빠지는 사용처(국세청 안내)

- 국세·지방세, 전기·수도·가스·전화료, 아파트관리비, 도로통행료
- 학교·어린이집 등의 수업료·보육비, 보장성보험료
- 해외 사용분, 면세점 사용분, 회사 경비 처리분, 개인 간 중고거래
- 신차 구입비(중고차는 구입금액의 10%만 대상)

## 7.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지점

- 25% 기준은 사용액이 아니라 **총급여**를 기준으로 해요. 총급여는 연봉 중 비과세를 뺀 금액이라 본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.
- 연간 공제 한도는 공제된 금액에 대한 한도이지 사용액의 한도가 아니에요.
- 입사 전·퇴사 후 사용분은 대상에서 빠지고, 휴직 기간 사용분은 대상이라고 국세청이 안내해요.
- 전통시장·대중교통·문화비는 일반 카드 사용분과 공제율이 달라서, 홈택스 자료에서 구분해 확인해야 해요.
- 소득공제 금액이 그대로 환급액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. 공제 후 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이 줄어요.
-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카드 사용액이 빠져 있다면 카드사 자료 제공 여부를 확인하세요. 간소화 자료의 조회 시기와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따르세요.

## 8. 체크리스트

- 총급여의 25%(최저사용금액)를 계산했다
- 결제수단별 사용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했다
- 제외 항목이 사용액에 섞여 있지 않은지 봤다
- 가족 사용액 포함 시 소득 요건을 확인했다

## 9 자주 묻는 질문

### Q. 체크카드가 무조건 유리한가요?

A. 공제율은 높지만 최저사용금액 이하 구간은 공제가 없어요. 이 글은 특정 결제수단을 권하지 않아요.

### Q. 월세 현금영수증도 포함되나요?

A. 국세청 Q&A에 임차인 명의 발급 안내가 있어요. 공제 포함 조건은 공식 확인이 필요해요.

### Q. 총급여가 7천만원을 넘으면요?

A. 기본 한도 250만원이고 문화비 공제가 빠져요(법령 기준 정리).

## 10 근거로 삼은 공식 출처

- 국세상담센터 Q&A(신용카드 등 소득공제):

<https://call.nts.go.kr/call/qna/selectQnaInfo.do?ctgId=CTG11898&mi=1318> (<https://call.nts.go.kr/call/qna/selectQnaInfo.do?ctgId=CTG11898&mi=1318>)

-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(<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/제126조의2>) —

국가법령정보센터: [https://www.law.go.kr/LSW/lsLawLinkInfo.do?](https://www.law.go.kr/LSW/lsLawLinkInfo.do?lsJoLnkSeq=1001060529&chrClsCd=010202&lsId=001584&print=print)

[lsJoLnkSeq=1001060529&chrClsCd=010202&lsId=001584&print=print](https://www.law.go.kr/LSW/lsLawLinkInfo.do?lsJoLnkSeq=1001060529&chrClsCd=010202&lsId=001584&print=print) (<https://www.law.go.kr/LSW/lsLawLinkInfo.do?lsJoLnkSeq=1001060529&chrClsCd=010202&lsId=001584&print=print>)

- 2026년 귀속 한도·자녀 가산 세부: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함



공유

공유하기

카카오톡



링크 복사

네이버 블로그

밴드



Facebook

다른 고민 보기 · 루리에게 추천 상담 받기

## 11 마감 임박 공모전

출처: 루리의 줍줍(sungprofile.cloud) · 최신 내용은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